

7. 스크린 쿼터제와 직업의 자유 (수능 특강 p.141)

단락 분석

(1단락)

①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란 극장 경영자가 극장의 연간 상영일수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자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를 말한다. ②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법제화된 것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스크린 쿼터제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은 1993년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③ 2006년에 제정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극장 경영자는 연간 상영 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④ 스크린 쿼터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가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① **스크린 쿼터(할당량)제**에 대해 정의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어.
- ② 스크린 쿼터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진 것은 1966년,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3년! 감시단이 실제로 한국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고 있는지 감시했나봐.
- ③ 2006년에 제정된(만들어진) 법령에 따르면 연간 상영 일수의 **1/5은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한다.
- ④ 스크린 쿼터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어. 예를 들어 극장 경영자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흥행이 보장된 외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크린 쿼터제가 **극장 경영자의 자유 의사**를 막는 경우가 발생한다. 모든 법은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알지? 헌법에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자유 의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언제나 비판 받을 여지가 있어.

(2단락)

①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는 극장 경영자에게 극장 영업이라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헌법 제15조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다. ④ 스크린 쿼터제는 바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 ⑤ 그렇다면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된 공익적 목적은 무엇일까? ⑥ 영화가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강한 전달력을 지니는 표현 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영화의 보호는 자국 문화 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다. ⑦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화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⑧ 이러한 이유로 극장 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기본권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① **극장 경영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는 권리 =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네.
- ② 역시 헌법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 헌법 제15조에서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규정했구먼.
- ③ 하지만 헌법의 다른 조항인 제37조 제2항에서 **직업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했어. 이러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스크린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앞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 ④ 스크린 쿼터제는 위에서 얘기한 헌법에 기반을 두었다.
- ⑤ 앞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는 공익적 목적에 대해 설명할 거야. 오늘 지문은 술술 읽을 수 있어서 좋네 ㅎㅎ
- ⑥ 영화는 일정한 문화를 표현하고 전달력도 강하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한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화적 측면**에서 스크린 쿼터제로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
- ⑦ 이번엔 **경제적 측면**. 영화 산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영화 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 알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한국 영화가 쪽쪽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키워주겠다는 거지. 영화를 찍어도 영화관에서 상영 자체를 안해주면 돈을 벌 수 없잖아. 그럼 영화를 찍을 동기도 감소할 것이고. 반대로 영화로 거두는 수익이 늘수록 관객들이 더 좋아할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 영화가 전세계적으로 흥행하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럼 우리 영화뿐 아니라 문화 산업 전반이 더 좋은 실적을 올리고...아무튼 요즘 뉴스로 우리나라 영화들이 전세계에서 여러 모로 흥행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네~
- ⑧ 결론.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 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3단락)

①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원칙으로 비례성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비례성의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③기본권의 제한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해야 하며, 효율적인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침해의 정도와 공익의 비중을 비교하여 저울질 했을 때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④헌법 재판소는 한국 영화의 보호가 중요한 공공복리이기 때문에 목적이 정당하고, 스크린 쿼터제는 이러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⑤그리고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일수를 제외한 그 밖의 기간에는 외국 영화 상영이 가능하여 침해가 최소화되고,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공공복리와 극장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비교하여 비중을 따져볼 때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① 우리나라 헌법에는 기본권 제한(위 단락의 경우 직업 수행 자유의 제한)의 **정당화를 위한 원칙**이 있다. 스크린 쿼터제가 정당화되려면 비례성의 원칙과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야.
- ② **비례성의 원칙**부터 차례대로 설명할 건가봐. **과잉 금지**의 원칙이래. 금지를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된다는 원칙이겠지 뭐.
- ③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입법자(국회나 행정부 등 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선택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해야 하며, 기본권을 되도록 **적게** 침해해야 하고, 침해 정도와 침해함으로써 보호 받는 공익의 비중이 비슷해야 한대. 뭔가 기시감(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 데자뷔)이 들지 않아? Legal Mind4. 정당 방위 성립 요건에서 정당 방위 성립 조건(정당 방위 상황, 방위하려는 의사, 상당성)을 설명했을 때 내용과 거의 비슷할 걸? 법 지문에서 어떤 법이나 행위의 적절성, 정당성을 따질 때 고려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
- ④ **헌법재판소**는 한국 영화의 보호라는 스크린 쿼터제의 목적이 정당하고, 또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스크린 쿼터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스크린 쿼터제가 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했으니 비례성 원칙 중 절반은 충족!
- ⑤ 또 침해가 최소화 되고, 극장 경영자가 침해 받는 직업의 자유와 그로 인해 보호되는 공공 복리의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고 보았다. **비례성의 원칙을 모두 충족!** 아,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아닌지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야.

(4단락)

①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헌법 제10조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개성 신장이나 생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②헌법 재판소는 본질적 내용 침해 면에서도 한국 영화의 연간 의무 상영일수 동안 극장 경영자가 한국 영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① 비례성의 원칙을 설명했으니 이제 무엇을 설명해야 하지?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침해하면 안된다는 원칙일 것 같구만.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 침해는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나봐. **개성 신장 혹은 생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제한**하면 직업 선택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당하는 거래.
- ② 아까 스크린 쿼터제의 정의를 다시 떠올리자. 극장의 연간 상영 일수 가운데 **1/5만큼은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제도였잖아. 이외에는 극장 경영자가 영화 상영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니 생계가 불가능하지는 않을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

(5단락)

①스크린 쿼터제의 정당성은 평등권의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②문화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의무 상영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영화 매체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③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④그런데 평등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가 있다. ⑤우리 헌법의 평등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는 평등을 의미한다. ⑥스크린 쿼터제를 통한 문화 산업 보호는 문화 주권의 확보와 관련이 있고,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외국영화에 비해 자본이나 제작 여건이 열악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⑦따라서 스크린 쿼터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 ① 아니, 원칙을 지켰으면 됐지 **평등권의 관점에서 검토**를 또 해야한다니...ㅠㅠ 그래도 마지막 단락이니 끝까지 잘 읽어야겠지?
- ② 다른 문화 매체에는 제한이 없는데 **영화 매체에만 제한**을 두니까 불평등하다고 비판할 수 있겠어.
- ③ 이번에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아까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설명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네. 아까도 나온 제37조 제2항이 다시 제시되었어.
- ⑤ 모든 것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평등이래. 주차장에도 버스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하잖아.
- ⑥ 영화 매체만 차별해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 영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문화 주권** 확보와 관련이 있고, 외국에 비해 자본, 제작 여건이 열악한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대. 문화 주권은 외국의 영향 없이도 우리 스스로 문화를 생산해내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뜻해. 문화 주권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지 못하고 외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게 될거야. 그렇게 되면 외국이 영화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해도 우리는 대체할 만한 문화가 부재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게 되겠지? 그러니 가능하면 주권은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보니 5단락은 글쓴이의 의견, 주장을 제시하고 있어. 스크린 쿼터제 지문도 **화작이나 언매 지 문으로도 충분히 연계**될 가능성이 있겠다~
- ⑦ 결국 평등권의 관점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스크린 쿼터제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구조도 정리

스크린 쿼터제는 정당한 제도인가?			
헌법적 기반	헌법 제37조 2항	직업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비례성의 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	평등권
	입법 목적이 정당해야 함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되도록 기본권을 적게 침해 침해 정도와 공익 정도가 비슷해야 함 → 모두 충족	개성 신장이나 생계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평등권도 제한될 수 있음 → 스크린 쿼터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음
스크린 쿼터제는 정당한 제도!			